



건설 중인 공장의 공중 촬영을 통한 메탄올 제조 공정 취득의 영업비밀 부정취득 여부 관련 항소심 사건

05

EI Dupont v. Christopher, 431 F.2d 1012 (1970)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미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	사건번호	28254
판결 일자	1970.07.20	판결 결과	전부 기각
원고 (피항소인)	이.아이. 듀퐁 드네몰 & 컴퍼니 (E.I. duPont deNemours & Company, Inc.)		
피고 (항소인)	롤페 크리스토퍼 (Rolfe Christopher) et al.		
참조 법령	Restatement of Torts § 757		
참조 판례	Hyde Corporation v. Huffines, 1958, 158 Tex. 566, 314 S.W. 2d 763; Brown v. Fowler, Tex.Civ. App.1958, 316 S.W.2d 111, 114		
영업비밀	메탄올 제조 공정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제조공정, 부적절한 수단, 역설계, 독자 발견		

02 사건 개요

원고는 텍사스 보몬트(Beaumont)에서 메탄올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익명의 제3자가 사진사들인 피고들을 고용하여 비행기로 원고의 생산 공장 위를 촬영하도록 요청하였다.

원고는 공장 위를 비행 중인 비행기를 조사하여 피고들이 제3자를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피고들에게 의뢰인의 정보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공개로 인한 손해배상, 사진 전파 및 추가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임시적 금지명령(temporary injunction)과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재판관할권이 결여되었고, 구제 가능한 소제기에 실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 지방법원은 원고가 유효한 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약식판결 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¹⁾를 신청했고, 이 사건은 그 중간 항소에 관한 사건이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메탄을 생산 공정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원고는 구제 가능한 소제기에 실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모든 행동이 공공의 영공(public airspace)에서 진행되었고, 정부 비행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비밀유지관계도 위반하지 않았고, 어떠한 기망 또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

04 판결 요지

영업비밀 부정취득이 반드시 불법침입, 기타 불법적인 행위에 의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 보호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면 제소 가능하다.

역설계나 독자 개발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은 허용되나, 소유자의 허가 없이 독자적 발견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 없이 취득하는 것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한다.

원고는 공장을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공장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공중 촬영을 통해 영업비밀이 노출되지만, 건설 중인 공장에 지붕을 씌우는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건설 중인 공장의 상공에서 공중 촬영을 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 이에 원심 지방법원의 판단을 유지한다.

1) '중간 항소'라 함은 당사자 모두에 대한 청구가 전부 해결되기 전에 하는 항소(appeal)를 말한다.

05 Key Point

미연방 법원은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지를 살펴 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reasonable) 수준의 예방책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과도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